

장애 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정도 재판정 기한 경과 및 재판정 불응으로 장애 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파 주 시



- 공 고 명 : 장애 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
(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7. ~ 2026. 7. 22. (15일간)
- 공고방법 : 파주시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및 내용

가. 처분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통지			
처분대상	성 명	정O화	생년월일	*****-1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9*-*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장애 정도 재판정 기한 경과 및 재판정 불응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장애인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32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82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청문실시

- 일 시 : 2026년 7월 23일(목) 11시
- 장 소 :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지하 구내식당 옆 청문실

5.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경기도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940-8411)